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 산업별 순환경제 특별전시 지원 안내서 -

2025.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순서

[사업 안내]

1. 사업 안내	1
2. 지원 절차 및 선정 기준	3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4
4. 관련 규정	5
5. 신청 및 선정 절차	6

[운영요령]

1. 사업 운영요령	10
------------------	----

[별지 자료]

별지1. 신청 서류	22
2. 과제계획서	23
3.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28

1.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 순환경제*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우수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시장 개척·확대 지원

*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친환경 경제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업종별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지원 내용 및 범위

- (지원 내용) 산업별 순환경제 특별전시 존(zone) 구성 및 기업 참여에 따른 부스 참가 비용 지원

- (A형) 업종별 협·단체가 산업 특성에 맞는 순환경제 전시 존과 참여 기업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지원

- (B형) 순환공급망 또는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전시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것을 지원

○ (지원 범위) 4부스 단위 부스 참가* 비용 (1부스 3.3백만원 기준)

* 부스 신청 비용만 지원(부대시설, 기타 소요 비용 지원 불가)

- (B형) 실제 부스 참가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할인 적용 후의 부스 참가 비용으로 견적서 등을 통해 확인

○ (지원규모) 총 40부스 규모

* 지원규모는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협약 체결 후 정부지원금 70%만 선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선금 이외의 부스 참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선납 필수*

* 잔금 30%는 전시 참여 확인 후(행사 종료 후) 지급

□ 지원 제외 기준

○ 협·단체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아래 지원 제외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을 취소함

< 지원 제외 사항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과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 절차 및 선정 기준

□ 지원 절차

절 차	추진 내용	일 정
① 사업 공고	○ 전시 참가 지원 과제 모집 공고 (순환경제정보플랫폼/www.circular-economy.or.kr)	'25.4.4
② 서류 접수	○ 과제계획서(전시회 참가지원 계획서) 접수	~'25.4.18
③ 서류 검토 및 보완	○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25.4.18
④ 선정 평가	○ 서면으로 과제계획서 평가	~'25.4.23
⑤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결과 통보 후, 지원 대상 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 협약 체결	~'25.4.30
⑥ 선금 지급	○ 지원금의 70% 지급	~'25.5.7
⑦ 전시 참여	○ 순환경제 페스티벌 전시 참여	'25.7.2~4
⑧ 잔금 지급	○ 지원금의 30% 지급	~'25.7.15

※ 상기 일정은 과제 수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기준 및 방법

- (평가방법) 서류 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 필요 시 화상 평가)
-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 전시 대상 제품·기술·서비스의 우수성, 전시 참가 전략 및 목표, 예산의 적정성 등

<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지원 필요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순환경제 전시 주제와의 부합 여부 • 전시 참가 구성 기업의 적합성
전시 대상 제품·기술·서비스의 우수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참여 기업의 핵심 모델·기술·제품의 차별성, 혁신성, 미래 성장 가능성 등
전시 참가 전략 및 목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기업 또는 협·단체의 홍보 및 총괄 관리 역량 • 성과목표, 전략 등의 실현 가능성
신청 예산의 적정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 신청 규모의 적정성
합계	100	

- (선정방법) 평가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선정
- (선정결과) 선정된 기관·기업에 개별 통보하며, 협약 내용 및 절차(계약서 체결 시점, 제출 서류 등)는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4월 4일(금) ~ 4월 18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ce@kncpc.re.kr)
- (신청자격) 순환경제 페스티벌에 부스 신청을 완료*한 협·단체 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 기업

* 순환경제 정보플랫폼(www.circular-economy.or.kr)에서 부스 신청 필요
부스 신청서에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 또는 협·단체 표기 요망

- (A형) 업종별 협·단체가 전시 참가 기업을 구성 및 대표하여 전시 지원을 신청하되, 참가 기업은 개별적으로 부스신청을 완료해야 함
- (B형) 컨소시엄 대표 기업이 전시 지원을 신청하되, 컨소시엄 구성 기업은 개별적으로 부스신청을 완료해야 함

□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A형	B형	비고	양식
1	과제계획서	○	○	날인본	별지2
2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	날인본	별지3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등기부등본(택1)	○	○	사본	
4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원본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비영리기관 면제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순환경제실
 - 김재호 연구원 (02-2183-1538, jaeho1130@kncpc.re.kr)

4. 관련규정

- **지원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관련규정** : 순환경제 산업 현황 조사 및 제도 활성화 사업 운영요령 등

5.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 및 선정 절차

① 협·단체 소속 기업 및 컨소시엄 구성 기업의 개별적 부스 신청
(협·단체 소속 기업 및 컨소시엄 구성 기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제출처) 순환경제정보플랫폼(www.circular-economy.or.kr)을 통해 제출

- (신청 방법) 순환경제정보플랫폼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상단의 전시회/행사-순환경제 페스티벌-부스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회원가입 시 기업정보 입력 필수

전사회/행사 > 순환경제 페스티벌 > 행사 개요

행사 개요

행사 개요 | 부스신청 | 참가기업 소개 | 상생라운지 | 공지사항

행사명 |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개최 목적 | 순환경제 정책·기술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장 마련

일시 | 2025.7.2(수)-7.4(금)

장소 | 코엑스 마곡 전시장

참가 대상 | 순환경제 관련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및 소비자 등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연합포럼

후원 |

전시 분야 | 주요 업종별 순환경제 활동 및 대표기업 제품·서비스를 소개하는 산업관, 정책홍보관, 기업지원관 등

전시 규모 | 200개 기업, 기관 300부스 이상

참가자 수 | 10,000명 이상

<그림. 부스 신청 화면 >

* '순환경제정보플랫폼-마이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수정 가능

② 업종별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 기업의 전시 지원 신청

(업종별 협·단체 및 컨소시엄의 대표 기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전시 지원 신청 시, 과제계획서를 제외한 서류는 협·단체 소속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기업 모두 제출 필수
-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개별 파일로 스캔 후 하나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과 이메일 제목은 “[전시 참가 지원] 협·단체 명(또는 컨소시엄 대표 기업)” *으로 하여 제출

* (예시) [전시 참가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유의사항) 반드시 업종별 협·단체와 컨소시엄의 구성 기업의 부스 신청을 완료한 후 전시 지원 신청 진행

③ 적합성 검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지원 제외 사항 해당 여부를 CREPORT, NICE신용평가 등을 통해 검토 후, 해당 기업에 한하여 소명 요청 예정
- 제출서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신청기관에게 부족한 서류에 대해 일괄적으로 요청 예정
- (유의사항) 보완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 신청 취소로 간주

④ 서류평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서면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서류평가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⑤ 선정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업종별 협·단체 및 컨소시엄의 대표 기업)

- 선정된 기관·기업에 개별 통보하며, 협약 내용 및 절차(계약서 체결 시점, 제출 서류 등)는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① 반드시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 A4 용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별지 서식에 기입된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 또는 지원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 ④ 제출서류에서 요구하는 날인, 서명은 필수이며, 위조나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 또는 지원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순환경제 산업현황 조사 및 제도 활성화》
운영요령**

순환경제 산업현황 조사 및 제도 활성화 운영요령

2025. 2. 1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세입세출예산서상의 「온실가스감축제도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순환경제 산업현황 조사 및 제도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경제 산업현황 조사 및 제도 활성화’(이하 “사업”이라 한다)라 함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친환경산업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를 말한다.

3. “사업운영위원회”이라 함은 사업의 계획 및 결과, 참여기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업비”라 함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장관이 「친환경산업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게 출연한 자금을 말한다.
 6. “과제비”라 함은 참여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정부출연금을 말한다.
 7. “정산”이라 함은 사업비와 과제비의 사용실적에 대하여 동 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8. “위탁정산”이라 함은 사업수행기관이 지정한 외부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친환경산업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 지침을 준용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사업수행기관)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획 및 운영
2.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4. 참여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
5.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참여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이내에 사업운영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다음 연도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참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업운영위원회의 사업 수행성과에 대한 심의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경우

제5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운영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사업수행기관의 센터소장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및 산업계
 -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나.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10년) 이상 경력자
-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4. 공무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등 기술·경영전문가
6. 기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운영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

②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할 수 있

다.

1. 사업 수행성과 점검 및 수행계획에 대한 자문·심의
2. 제4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선정 평가
3. 사업 목표 또는 내용 변경에 대한 자문·심의
4.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의 변경 심의
5.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참여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해약 및 제재조치 심의
6. 제11조제4항에 따라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참여기관의 판별
7. 그 밖에 장관이 사업의 기획·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위촉에서 제척된다.

1. 불성실, 불공정한 평가 이력이 있는 자
2. 신청기관 또는 지원기관에 속한 자
3.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⑤ 운영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운영위원 위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과제 계획서 및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3. 과제비의 적법한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4. 과제의 보안 관리 및 윤리 준수
5. 과제 수행 결과 및 성과의 활용을 위한 협조
6. 과제 수행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또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

제3장 사업계획 수립 등

제7조(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① 장관은 해당연도의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의 목표 및 내용
2. 사업의 평가기준 및 방법
3. 참여기관 등을 포함한 추진체계 및 인력 현황
4. 사업비 구성 및 사용계획
5. 기타 사업에 관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내용
2. 사업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변경
3. 관계법령 및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사용 계획의 변경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자문·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9조(협약의 체결 등)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과제 수행 계획(과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포함)
2. 참여기관과 참여기관 장의 권리·의무
3. 협약 위반 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협약 변경의 승인 사항 또는 협약 변경의 통보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1. 과제 수행 계획 및 목표의 변경
2. 과제 책임자 변경

3. 협약기간 변경

4. 기타 협약의 주요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변경의 승인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협약의 변경은 사업수행기관의 협약 변경 승인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협약 변경 통보 사항에 대한 협약의 변경은 참여기관의 장이 사업수행기관에게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협약의 해약 등) ① 사업수행기관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경우
2.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참여기관이 과제를 다른 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등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과제의 평가 및 검토결과에 불응한 경우
5. 제11조제4항에 따라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중복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과제비 지급 중단, 과제비 환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종류, 제재 정도 등은 제9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 간 협약에서 정한다.

제5장 보고 및 평가

제11조(결과보고) ① 참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 이내에 과제비 사용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수행 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4. 기타 최종보고를 위해 참여기관이 제출할 필요가 있는 서류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제비 사용실적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제비 사용실적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수정보완 요구에 불응한 참여기관을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사업 수행성과 점검 등)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 이전까지 사업운영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당해연도 사업목표의 달성도, 추진실적의 양적·질적 수준 적절성 등
2. 다음 연도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등

② 사업운영위원회는 연차평가의 경우 ‘계속’, ‘보완’, ‘중단’으로 평가하며, 최종평가의 경우 ‘성공’, ‘보완’, ‘실패’로 평가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보고)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성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사업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기타 최종보고에 필요한 서류

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 결과의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현장실태조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의 관리

제14조(사업비 지급 및 계상 등) ① 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분할 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사업비 사용 및 관리)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 및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별로 이자 등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별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업비 사용과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사업비 정산 등)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정산을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정산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으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정산 잔액 및 이자 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7장 보칙

제17조(사업 관리지침 제정·운영)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본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 및 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장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순환경제 관련 유공이 있는 기업(또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애로사항 지원 또는 기반구축 성과 등을 통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그 밖에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신시장 창출에 기여한 경우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사업운영위원회 위원 등 본 요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1. 신청 서류

No.	제출서류	제출기관	A형	B형	비고
1	과제계획서	협·단체 또는 컨소시엄 대표 기업	○	○	날인본
2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협·단체 또는 컨소시엄 대표 기업 (소속 기업은 선정 이후 협약 단계에서 제출)	○	○	날인본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등기부등본(택1)		○	○	사본
4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원본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비영리기관 면제

1. 전시 참가 기업 현황

- 참가기업 구성 및 소개

-

-

-

- 참가기업이 추진(계획)중인 순환경제 관련 사업(활동) 소개

-

-

-

- 참가기업이 보유한 주요 기술 및 제품

-

-

-

2. 전시 대상 제품·기술·서비스의 우수성 및 지원 필요성

* 본 과제의 핵심 사업 모델·기술·제품이 국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얼마나 혁신적인지, 순환경제 정부 정책 방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서술

○

-

.

.

○

-

.

.

3. 전시 참가 전략 및 목표

* 전시회 참가를 위한 사전·현장 마케팅 전략, 부스 운영 방안, 성과 목표(상담액, 계약액, 비즈니스 미팅 성사 건수 등) 등을 기재

○

-

.

.

○

-

.

.

○

-

.

.

4. 과제비 세부 내역

* 부스 신청 수량을 입력하면 소계가 자동 계산

(단위: 천원)

구분	단가(a)	수량(b)	소계(c=a*b)
부스 신청	3,300		3,300

별지3.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산업별 순환경제 특별전시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CREPORT, NICE신용평가 등

② 제공·조회 목적

귀 기업(신용)정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산업별 순환경제 특별전시 지원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에 귀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③ 제공·조회할 법인(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신용능력정보 : 납세실적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